**[ 기술보호와 법 중간고사 ]**

**[ 2주차 ] 법과 법률**

Q. 법률은 ( )에서 제정한 법이다.

Q. ( )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포한 법을 말한다.

Q. 성문법의 장점은 ( )이다.

Q. 성문법은 사회 사정의 신속 적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Q. ( )은 문장으로 표현된 제정법이 아니고 실제 관행으로 존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Q. 불문법의 종류로는 ( )과 ( )이 있다.

Q. ( )은 사회생활 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져서 일반인이 법적 확신 내지 인식을 가짐으로써 법적 가치를 얻는 불문형식의 법이다.

Q. ( )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불문의 규칙을 의미한다.

Q. 법원의 판결 자체가 판례법이 된다?

Q. ( )은 사람, 사항, 장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법이다.

Q. ( )은 특수적인 좁은 사항에 국한된 효력범위를 갖는 법이다.

A. 의회

A. 성문법

A. 고정성

A. O

A. 불문법

A. 관습법, 판례법

A. 관습법

A. 판례법

A. X, 불문법은 법원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A. 일반법

A. 특별법

Q. 법을 적용하는 순위에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Q. 법은 ( ) 시부터 법의 효력을 가진다.

Q.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기간은 ( )으로, 법에 따라서는 따로 시행일을 정하기도 한다.

Q. ( )은 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Q. ( )은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Q. ( )은 범죄지가 어디인지 여부를 불구하고(외국에서의 행위라도)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Q. ( )은 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

Q. 우리나라 현행법은 ( )를 기본원칙으로 ( ) 및 ( )를 가미하고 있다.

Q. ( )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법계통으로, 성문법주의를 따른다.

Q. ( )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통으로, 판례법주의를 따른다.

A. O,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A. 시행

A. 법의 주지기간

A. 법률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A. 속지주의

A. 속인주의

A. 보호주의

A.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A. 대륙법계

A. 영미법계

**[ 3주차 지식재산권 ]**

Q. 지식재산은 ( )로 얻어진 ( )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Q. 지식재산은 ( )이고 ( )인 권리이다.

Q. 지식재산권에 독점배타적 권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함이다?

Q. 대부분 지식재산은 앞서 만들어 놓은 지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과 경험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 )을 지닌 제한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Q.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 )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지식재산은 일정한 공익성을 지니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Q.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 ), ( ), ( )가 있다.

Q.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 )으로서 ( )에 주어지는 ( ) 권리이다.

Q.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출원 후 ( )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특허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 인간의 지식활동의 성과, 창작물

A. 배타적, 독점적

A. O

A. 일정한 공익성

A.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

A. X, 내가 만든것에 대해 사회적 공헌을 하는 의미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A.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A.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 독점배타적

A. 20

A. O

Q. ( )은 ‘소발명’이나 ‘계량발명’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Q.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물품 등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Q. 실용신안권의 요건은 ( ), ( ), ( ) 이다.

Q.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 )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 )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해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Q. 디자인권은 디자인이 물품에 구현되어야 한다?

Q. 디자인권은 ( ), ( ), ( )을 충족해야 한다.

Q. 디자인등록을 하면 출원 후 ( )년간 권리 보호를 받는다.

Q. ( )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Q. 영업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기업은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합리적은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Q. 국가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A. 실용신안권

A. O

A.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A. 10

A. 디자인권

A. O

A.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A. 20

A. 영업비밀

A. O

A. X, 국가는 부정한 수단(절취, 기망, 협박, 산업스파이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게 된다.

Q. ( )은 타인의 상품과 내가 생산한 제품을 구별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된 표시를 말한다.

Q. 상표권의 요건은 ( ), 즉 ( )이다.

Q. ( )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Q.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 )이라고 하며, 이러한 ( )을 창작한 자를 ( )라고 한다.

Q. 저작권은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한다?

Q.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A. 상표권

A. 식별력, 자타상품식별

A. 저작권

A. 저작물, 저작자

A. O

A. X,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동안 보호하고,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이 만료하면 권리 소멸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 4주차 발명 ]**

Q. 발명이란 ( )을 이용한 ( )으로서 ( )을 말한다.

Q. 기존의 요소들을 변화시켜 유용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것이라면 모두 발명이다?

Q. 발명은 새로운 것 중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Q. 발명은 ( ), ( ), ( ) 등을 가진 기술적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Q. 대부분의 경우 발명은 선행단계인 발견을 거쳐 완성된다?

Q. 발견은 특허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Q. 용도를 발견하는 발명은 용도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Q. 일반적인 발명 기법으로는 ( ), ( ), ( ) 이 있다. 그 외로는 반대로 하기, 크기 바꾸기, 편리하게 하기가 있다.

Q.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권의 존재여부 및 권리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구체화의 정도에서 기술에 못 미친다?

Q. 발명과 기술은 ( )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인 점에서 일치한다.

A.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

A. O

A. O

A. 자연법칙의 이용성, 창작성, 창작의 고도성

A. O

A. O,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발명과는 구분된다.

A. O

A. 더하기 기법, 용도 바꾸기 기법, 모방하기 기법

A. O

A. O

A. 자연법칙

Q. 발명과 기술은 산업상 실제로 그대로 이용가능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Q. ‘만유인력의 법칙’, ‘자유낙하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은 발명과 다르다?

Q. 발명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 )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한 (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 되어 있다면,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Q. 구성요소 재결합에 의한 발명기법으로는 구성요소의 ( ), 구성요소의 ( ), 구성요소의 ( )이 있다.

Q.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특정 구조를 제거함에 따라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Q. 구성요소의 삭제에 의한 발명 창출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효과만 있어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Q. 조선시대에 특허제도가 있었다면, ‘훈민정음’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었을까?

Q. 특허로 될 수 있는 발명이란 ( )을 이용한 ( )으로 ( )을 의미한다.

A. X, 발명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단인 점에서 기술과 구별된다.

A. O,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A. O

A.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

A. O

A. 부가, 삭제, 치환

A. O

A. O

A. X,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므로 ‘한글’ 자체는 특허로 등록될 수 없다.

A.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

Q.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

Q. 마르크스의 유물론,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 등은 발명이 될 수 없다?

Q. ‘발견’은 발명과 구분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Q. 영업발명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비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합성물로 인간의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자연적 박테리아와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 유전자는 발명이 될 수 있다?

**[ 5주차 특허 ]**

Q.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이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Q. 특허의 요건으로는 ( ), ( ), ( ), ( )이 있다.

Q.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발명에 해당될 수 없다?

Q.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생산 등 산업 활동을 위하여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Q.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자연법칙 자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 X

A. O, 인문학적 사상이며, 기술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 없다.

A. O, 창작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발명’은 특허로 보호X

A. O, 영업방법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경우 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

A. O

A. O

A.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원주의(선출원주의)

A. O

A. O

A. X,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X

Q. 수술기구에 대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Q.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추상적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 내지 ( )이 있어야 한다.

Q. 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기대하는 기술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 )이어야 한다

Q.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한 독점권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디자인과 같은 미적 창작물이나 단순한 정보는 발명이 되지 못한다?

Q. 제품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Q. ( )은 출원된 발명이 과거 공개된 발명(선행기술)과 동일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Q. 신규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Q.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본다?

Q.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본다.

Q. 하나의 특허는 전세계에서 통용된다?

A. X,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구체성, 실현가능성

A. 객관적

A. O

A. O, 발명은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의 창작이다.

A. X,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지, ‘기술적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제품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A. 신규성

A. O

A. O

A. O

A. X,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다라 국가별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특허’, ‘미국특허’등의 표현이 맞는 표이다.

Q. 나발명은 미국여행 중 ‘충전기내장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보았다. 별도 충전기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할 것이라 보았고, 우리나라에는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기술을 나발명이 국내 특허로 출원할 수 있을까?

Q. 나발명은 1년동안 고민하여 완성된 발명을 세상에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렸다.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니, 이미 알려진 발명이라 신규성이 없다고 한다. 나발명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는 것인가?

Q. ( )는 실수로 홈페이지, 박람회, 논문발표 등으로 공지되어 알려지게 된 경우 출원 후 1년 이내에 먼저 공지된 사항을 신고하면, 신규성이 없더라도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Q. ( )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한다.

Q. 진보성은 ( ), ( ), ( ) 3요소에 의하여 판단한다.

Q. ( )은 해당 발명의 목적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Q. ( )은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의 선택 및 구성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Q. ( )은 해당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유의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A. X,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비공지성’ 즉, 알려지지 않았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어야 하고, 발명이 특허로 권리를 받게되면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A. X, 다른 사람이 아닌 발명자 스스로 알린 것이라 하여도 신규성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

A. 신규성의제

A. 진보성

A.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A. 목적의 특이성

A. 구성의 곤란성

A. 효과의 현저성

Q. 특허 출원시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술분야에 정통한 심사관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Q. ( )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출원하는 시점으로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심사하는 시점이 아닌 출원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Q. ( )은 특허는 같은 발명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Q. 나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구를 발명하여 특허출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김깜빡이 발명을 먼저 하였는데 깜빡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발명과정에서 연구노트 자료도 있어서 먼저 발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특허는 먼저 발명한 김깜빡이 받게 되는 것일까?

Q.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에 한 개의 특허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 )이라고 한다.

**[ 6주차 권리 ]**

Q. ( )란 법에 의해 주어지는 힘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이다.

Q. 법과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Q.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는 ( ), ( ), ( ), ( ) 이 있다.

A. X, 진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보통사람의 통상적인 시각에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진보성 판단은 해당 분야에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높고 엄격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A. 사후 판단 금지의 원칙

A. 선원주의(선출원주의)

A. X,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인정하여 주는데 이를 ‘선출원주의’ 라고 한다.

A. 발명의 단일성

A. 권리

A. O

A.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Q. ( )은 권리의 대상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Q. 지배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협력이 불필요하다?

Q. 지배권은 직접 자기의 의사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Q. 지배권은 권리의 대상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행위로 권리를 행사한다?

Q. ( )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적인 작용을 하는 권리이다.

Q. ( )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Q.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Q. ( )은 타인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권리이다.

Q. 권리의 이전성에 따른 분류로는 ( ), ( )이 있다.

Q. ( )은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다.

Q. ( )은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이다.

Q. 일신전속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다.

A. 지배권

A. O

A. O

A. O

A. 청구권

A. 형성권

A. O

A. 항변권

A.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A. 일신전속권

A. 비전속권

A. X

Q. 비전속권은 타인에게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Q. ( )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당하는 법률상 구속을 말한다.

Q. 권리는 ( )이고, 내용은 특정한 ( )이고, 의무는 ( )이고, 내용은 특정한 ( )이다.

Q. ( )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종류는 ( )과 ( ) 이 있다.

Q. 자연인의 경우 어느 시점을 출생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순간부터 출생한 것으로 보는 ( )이 통설이다.

Q. ( )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Q. 특허, 지식재산의 경우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만 해당한다?

Q.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에게 있다. 이는 발명적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Q. 발명자가 되려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

Q. 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특허법은 무권리자 등이 특허출원에 대해 선출원주의 적용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 O

A. 의무

A. 법률상 힘, 권익 / 법률상 구속, 불이익

A. 권리의 주체, 자연인, 법인

A. 전부노출설

A. 법인

A. X, 법인도 가능하다. 예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있다.

A. 발명자

A. O

A. X

A. O

Q. ( )는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Q. 공동발명이 되려면 2인 이상이 발명의 완성에 참여하여 기술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질적 상호협력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Q. 발명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이나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 관리자 등 또한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

Q. 공동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Q.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Q.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분할이 가능하다.

Q.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Q.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 )이다.

Q.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위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Q. ( )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 공동발명자

A. O

A. X, 발명과정에 참여는 하였으나 단순한 조언이나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 관리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A. O

A. O

A. X,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분할이 불가능하다.

A. O

A. 20년

A. O

A. O,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A. 실시권

Q.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Q. 실시권의 종류는 ( )과 ( )으로 나눌 수 있다.

Q. ( )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Q.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Q. ( )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권의 상대개념으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Q. 하나의 통상실시권이 설정되더라도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다른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Q. ( )이란 종업원이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Q. 현재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 ) 을/를 채택하고 있다.

Q.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 )가 있어야 한다.

Q. 종업원의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A. O

A.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A. 전용실시권

A. X, 특허권자라도 실시할 수 없다.

A. 통상실시권

A. O

A. 직무발명

A. 법정보상제도

A. 고용관계

A. X, 직무발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경험에 기반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될 수 없다.

Q. ( )은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Q. ( )은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Q.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은 법정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Q. 종업원의 ( )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Q.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통지를 받은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Q.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Q. 직무상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발명자의 소유로 한다?

Q. A회사의 회장이 직원에게 신기술개발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발명은 발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회장도 발명자가 될까?

Q. A는 연구 제안을 하였으나, 매번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답답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하여 직접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A가 퇴직한 후 창업하여 완성한 제품의 특허는 A의 것일까?

A. 자유발명

A. 업무발명

A. O,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A. 통지의무

A. O

A. O

A. O

A. X, 단순 착상(아이디어) 제공자는 발명자로 보지 않으며, 착상 후 구체적인 창작 활동에 참여한 사람만을 발명자로 본다. 따라서 발명의 착상에만 기여한 회장은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실질적 구체화에 기여할 경우에만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

A. O, 퇴직 전에 발명의 착상을 하였지만, 퇴직 후 새로운 직장 또는 창업을 하여 발명을 구체화했다면 퇴직 연구원의 발명이 된다.

다만 발명의 착상단계를 넘어 발명이 구체화된 완성 단계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명백한 기술유출이 된다.

**[ 7주차 특허권 보호, 명세서 ]**

Q. ( )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Q.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침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Q.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특허권자의 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침해액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Q.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Q. ( )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A사는 특허제품을 판매하던 중 경쟁사인 B사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손해배상 외에 침해예방을 위한 제조 설비의 제거도 청구할 수 있을까?

Q.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상황 외에 침해의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한 침해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

Q.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Q.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Q.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를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Q. 형사처벌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

A. 손해배상청구권

A. O

A. O

A. O

A. 금지청구권

A. O, 제조 설비 제거나 금지청구, 형사처벌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비제거 등의 예방적 조치도 가능하다.

A. O

A. O

A. O

A. 6개월

A. O

Q.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이 형사처벌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

Q. ( )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을 통하여 명백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Q. 특허의 내용은 곧 명세서의 내용이다?

Q. 명세서는 발명자의 보호와 제3자의 이용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Q. 명세서는 ( ), ( ), ( ), ( ) 로 구성된다.

Q. 명세서의 역할은 ( ), ( ), ( )로 나뉜다.

Q. 특허청 등에 대해서 명세서는 ( )하는 역할을 한다.

Q. 출원인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 )로서의 역할을 한다.

Q.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볼 때, 명세서는 새로운 기술사상인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Q. 발명의 ( )은 간단명료하게 발명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시하여 출원발명의 분류, 정리,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Q. 발명의 명칭에는 추상적 기능이나 ‘특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X, ‘과실’이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A. 특허명세서

A. O

A. O

A.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A. 심사/심판대상의 특정, 권리로서의 역할,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A. 심사/심판대상을 특정

A. 권리

A. 기술문헌

A. 명칭

A. O

Q.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제3자에게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Q. 막연히 추상적으로 발명을 설명하거나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Q. 발명이 속하는 분야를 너무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관련 기술 분야까지 넓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Q. ‘기술분야’는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와 구체적 기술분야로 나누어 기재한다?

Q. ( )은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될 선행기술을 의미한다.

Q. 회사 내에서만 알려져 있고, 문헌이나 제품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은 종래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실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출원인 스스로 종래기술로 언급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인정한 종래기술로 간주될 수 있다?

Q.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수단을 기재한다?

Q. ‘발명의 효과’에는 발명의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유리한 점, 새로운 효과, 특이한 효과, 특유의 효과, 특징이 되는 점, 부가적인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Q. ‘발명의 효과’에는 추상적인 효과가 아닌 본 발명에 의한 기술적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A. O

A. O

A. O

A. O

A. 종래기술

A. O

A. O

A. O

A. O

A. O

Q. 구성의 차이가 작을 경우 효과의 현저성에 따라 특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발명의 효과에는 예측 가능한 효과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Q. ‘부호의 설명’에서는 각 도면에 그려진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는다?

Q.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개의 수단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Q.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항상 적어야 한다.

Q.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 )에 의해 정해진다.

Q.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해서 정하고 있다?

Q.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시에 특허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A. O

A. X, 특허출원시 특허명세서 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으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A. O

A. O

A. X, 필요한 경우에 적을 수 있다.

A. 특허청구범위

A. O

A. X, 특허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